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4년 기본계획

---

2024. 2.



**교 육 부**

[지역인재정책관]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그간의 성과 .....	2
III.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4
IV. 사업 주요내용 .....	6
V. 사업 관리 .....	15
VI. 향후 추진 일정(안) .....	24

---

## 1. 추진 배경

---

### □ 지방대학의 위기 가시화에 따른 지역소멸 가속화

- 학령인구 감소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 (대학) '23년 일반·전문대학 미충원 신입생 중 67.3%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지역)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

- 특히, 지역의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전반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

※ 지방대학 위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16, 직능연): [생산감소] 35조9,943억 원 [고용감소] 24만3천 명

### □ 개별대학을 넘어 지역 공동의 노력을 통한 위기 극복 필요

- 대학은 지역의 인력양성(교육), 산업 발전(연구) 및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나, 개별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 극복 제약
- 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현장과의 협력 등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대학·기업 등의 공동 노력 필요

### □ 지자체-대학의 협력을 통한 지방대학과 지역 전반의 혁신 유도

- 지자체-대학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정주 여건 개선의 혁신 생태계를 통한 지방대학과 지역의 활력 제고 추진

※ (예시 :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지방정부의 연구단지 구축과 민간(대학·산업체 등) 주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정보통신·바이오 분야 등의 혁신과 지역 발전 유도

- '25년 RISE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지역 주도의 사업 수행·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의 지역 안착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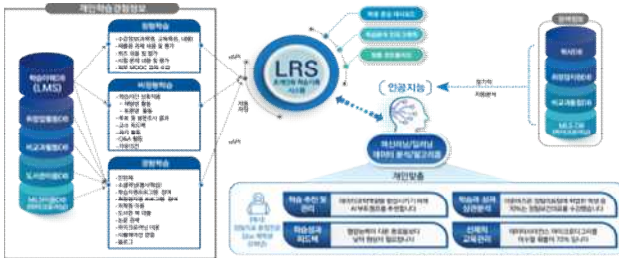
## II. 그간의 성과

### 1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의 비수도권 확산

- 지역혁신플랫폼 비수도권 전 지역 구축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 모델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 ※ ('20) 3개 플랫폼, 4개 시도 → ('24) 9개 플랫폼,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
- 대학-지자체-지역혁신기관 등 상호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
  - ※ 대학-지자체 간 인력교류 실적 : ('20) 13.2명 → ('22) 26.1명

###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구성·운영

-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핵심분야별 지역대학의 강점을 결합하여 맞춤형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 융합전공 참여 학생 수 : ('21. 2학기) 300명 → ('23. 1학기) 2,500명



【강원 LRS(학습기록시스템) 공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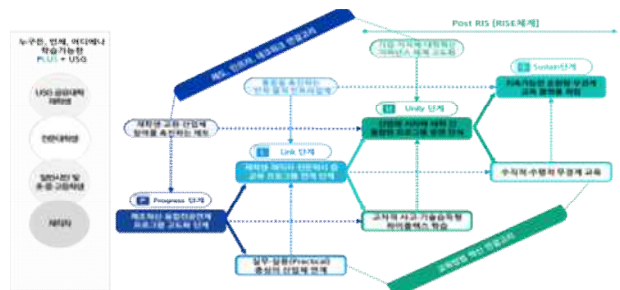


【대구경북혁신대학(DGM)】

- 지역기업·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 취·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21) 6,723명, ('22) 14,567명



【충북 메뉴판식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울산경남 PLUS+ USG 교육 플랫폼】

### 3

##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산업체 협업과제 수행 지원

- 개별 대학과 개별 기업을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연계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 신기술 개발 등 지원
  - ※ (광주전남-맞춤형기업지원) 지원 기업(40개) 매출액 : ('19) 9,062억 원 → ('22) 15,035억 원
- 지역혁신기관 간 공동 연구 및 인프라 공동 활용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문제해결 등 지역 발전 지원

### < 관련 사례 >

- (대구경북-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지역혁신기관-대학 등이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 제품 개발 및 인허가 획득을 통해 제품양산·시장진출
  - ※ (주요성과) 특허/인허가 이전 3.5건, 애로 기술 지원 8건, 국내외 인증 획득 7건
- (대전세종충남-지능형 전장제어시스템 클러스터 구축) 대학-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전환 지원 과제수행을 통해 공동 기술 개발 추진 및 기술이전 실시
  - ※ (주요성과) 3년 동안 기술이전 총 37건, 598.2백만 원 달성

### 4

##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환 지원

- 신규 참여 지역혁신플랫폼은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 지역혁신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운영센터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 '23년 3개 플랫폼을 신규 선정(부산, 전북, 제주)하였으며, 해당 플랫폼은 모두 총괄운영센터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
- 총괄운영센터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교부 범위 설정을 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 \* (기존) 중심대학까지 허용 → ('23) 지역협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교부 범위 자율 결정
  - 지역혁신 자율과제의 비율을 확대\*하여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양성체계의 연계성 강화
    - \* (기존) 전체사업비의 5% 이내 → ('23) RISE 시범지역 포함 시 전체사업비의 15% 이내

### Ⅲ. 2024년 중점 추진사항

비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목표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로 조성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 전략

1 지역의 사업비 관리 자율성 확대

2 지역과 연계한 사업 성과평가 체제 개선

3 지역 내 사업성과의 안착 및 확산 유도

대학-지자체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체계 구축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환 지원

주요 개편 사항

구분	2023년 사업	2024년 사업
대학 사업비 집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별도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비)회계 외 산단 회계 선택 허용</li> </ul>
전담기관 사업비 재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 : 재교부 범위 자율 결정</li> <li>✓ 총괄대학 소속기관 : 중심대학으로 재교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 : 재교부 범위 자율 결정</li> <li>✓ 총괄대학 소속기관 : 대학, 정출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재교부 가능</li> </ul>
자체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자율 참여</li> <li>✓ 내부 위원 중심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참여 기제 확대</li> <li>✓ 외부 위원 중심 관리</li> </ul>
연구재단 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자율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관계관 및 추천인 참여 의무화</li> </ul>

## [지역의 RISE 전환 지원을 위한 2024년 주요 개편사항]

### □ 사업비 관리의 자율성 확대

- (회계 선택권) 기업·연구소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에서 사업비 집행 시 대학(교비)회계 외 산단회계 선택 허용
  - ※ 단, 하나의 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동일한 회계로 운용해야 하며, 산단회계 선택 시 이월금은 대학회계로, '24년 사업비는 산단회계로 각각 집행
- (재원 배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총괄대학 소속기관으로 둔 경우에도 사업비 재교부 범위 확대
  - ※ (현행) 전담기관(총괄운영센터)을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에 두는 경우 재교부 범위를 지역협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 결정
  - 단, 소과제(자율과제 포함) 주관기관이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관기관까지 재교부 허용

### □ 지역의 사업 관리 역량 제고 및 책무성 확보

- (지자체 참여) 성과평가 관련 지자체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별 자체평가위원회에 지자체 추천인의 비율이 25% 이상 되도록 하고,
  - 연구재단 주관 성과평가에서 지자체 추천인과 관계관\* 참여 의무화
  - \*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의 실무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실·국장급 관계관 참여
- (외부 위원 확대) 플랫폼별 소과제(단위과제) 선정, 성과평가, 사업비 배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총원의 5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 의무화
  - \* 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위원으로 하고 상피제 의무화
  - 플랫폼별 자체평가 결과를 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성과평가의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자체평가 운영 유도

### □ 지역 내 사업성과의 안착 및 RISE로의 확산 유도

- 지자체-플랫폼 간 주기적 소통 간담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며,
  - 종합평가 및 시도별 RISE 계획에 대한 분석·연구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지역별 RISE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점검

## IV. 사업 주요내용

###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

#### □ 사업 세부내용

- ('24년 사업기간) '24.3.1. ~ '25.2.28.
  - '25.2.28. 사업 종료 이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으로 통합 예정
- (사업규모) 국고 3,420억 원(사업관리비 12억 원 포함)
  - 단일형 플랫폼(5개, 1,500억 원) + 복수형 플랫폼(4개, 1,920억 원)
  - ※ 전체 사업비(국비+지방비)의 30% 이상은 지방비로 부담
- (지원내용)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1)플랫폼을 구축하여 (2)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분야를 선정, (3)'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sup>(a)</sup>교육체계를 개편하고, <sup>(b)</sup>지역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과제 수행 지원

지자체 (선정 연도)	핵심분야	참여대학	국비 지원
광주·전남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신산업</li> <li>■ 미래형운송기기</li> </ul>	전남대, 목포대 등 17개 대학	480억 내외
울산·경남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li> <li>■ 스마트제조 ICT</li> <li>■ 스마트공동체</li> <li>■ 미래모빌리티</li> <li>■ 저탄소 그린에너지</li> </ul>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등 15개 대학	480억 내외
충북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바이오</li> <li>■ 정밀의료·기기</li> <li>■ 화장품·천연물</li> </ul>	충북대, 한국교통대 등 14개 대학	300억 내외
대전·세종·충남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li> <li>■ 모빌리티 ICT</li> </ul>	충남대, 공주대 등 24개 대학	480억 내외
강원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의료</li> <li>■ 디지털헬스케어</li> <li>■ 스마트수소에너지</li> </ul>	강원대, 연세대 미래, 강릉원주대 등 15개 대학	300억 내외
대구·경북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정보기기</li> <li>■ 미래차 전환부품</li> </ul>	경북대, 영남대 등 22개 대학	480억 내외
부산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항만물류</li> <li>■ 친환경 스마트선박</li> <li>■ 클린에너지</li> <li>■ 융합부품소재</li> </ul>	부산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등 14개 대학	300억 내외
전북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수송기기</li> <li>■ 에너지 신산업</li> <li>■ 농생명·바이오</li> </ul>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등 10개 대학	300억 내외
제주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바이오</li> <li>■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li> <li>■ 지능형 서비스</li> </ul>	제주대 등 3개 대학	300억 내외



## □ 참여기관

- 지자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

## &lt; 플랫폼 참여기관 자격 &gt;

- **광역자치단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 (단일형) 1개의 '광역자치단체' 단독
  - (복수형\*) '도'와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광역시'의 연합 또는 하나의 '도'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광역시' 간 연합
- \* 상기 기준으로 복수형 구성이 불가능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통의 핵심분야를 기반(분야연계형)으로 미참여 지역과 연합하여 복수형 신청 가능

##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202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대학 외 모든 학교 참여 가능
  - ※ 사업 선정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는 시점 까지 사업비 자체 부담
  - ※ 분교는 '분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함. 단, 캠퍼스는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그 밖의 지역혁신기관'으로 참여 가능(대학교육혁신에 사업비 지원 불가)
-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과학기술원, 폴리텍대학 등)도 참여 가능
  - ※ '대학교육혁신'에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나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사업비는 자체 부담해야 하며, '그 밖의 지역혁신기관'으로서 '핵심분야별 과제' 수행 및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가능

## &lt; 대학 유형 구분 &gt;

- (중심대학) 참여대학 중 각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대학으로서, 지자체 관련부서와 함께 핵심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핵심분야 과제 설정·추진에 관한 제반사항 관리
  - ※ 하나의 대학이 두 개 이상의 핵심분야에서 중심대학이 되는 것은 가능

- (총괄대학) 중심대학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의 학교로서 대학부문을 대표

※ 총괄운영센터를 비영리법인에 두는 경우 대학 유형 구분을 지역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 그 밖의 지역혁신기관

-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교육청, 학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기관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

※ 지역 내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으로는 소과제 등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과제 협업기관'인 경우에 한해 지역 외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 참여 가능

### □ 지역혁신플랫폼 조직

- 지역혁신플랫폼 운영조직은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와 기획·집행 기구인 '전담기관'으로 구성

### □ [심의·의결]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혁신플랫폼 운영, 사업 추진방향·사업계획 및 사업비 관련 사항 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 지역협업위원회 개요 >

- (개념) 지역협업체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역의 기구
- (구성)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 30명 이내의 위원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음
- (근거) 「지방대육성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위원은 지자체, 지역 내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지역기업,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장, 청년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지자체장과 총괄대학의 장이 공동으로 하되, 지역 내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 [기획·집행] 전담기관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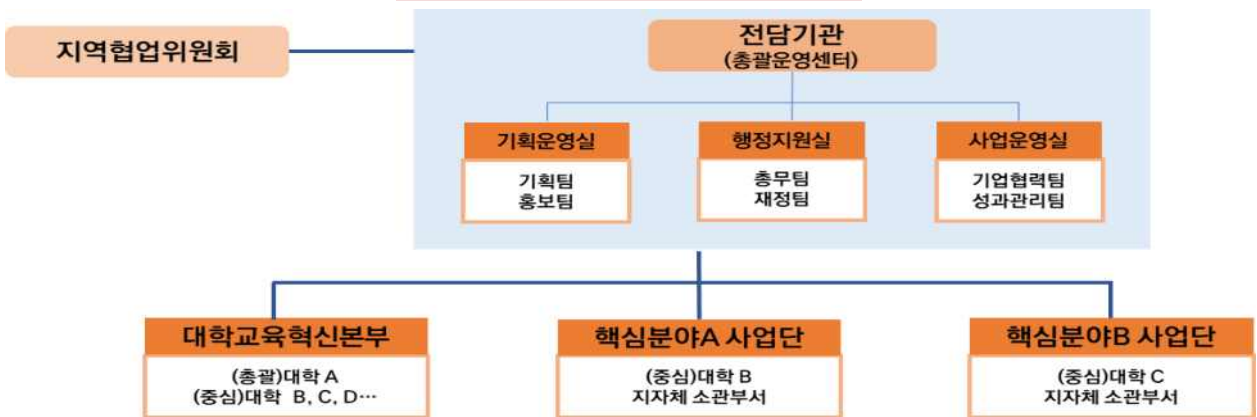
-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실행
- 전담기관(총괄운영센터)은 지역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비영리 법인 등으로 운영 가능  
※ 총괄운영센터를 총괄대학 소속 기관으로 둔 기존 플랫폼도 법인으로 운영 가능

< 총괄운영센터 역할 >

- (역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기획·조정하며,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관리
  - (기획·조정) 핵심분야 선정 및 분야별 역할 분담, 대학교육혁신과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 총괄·점검·관리\* 등
    -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참여기관 간 연계·조정, 플랫폼 안팎으로의 성과공유 활성화 등
  - (공유·연계) 지역 내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보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방안 및 개선방안 도출
- (센터장) 전문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7조) 위원으로서 중요사항 논의 및 진행 상황 수시 공유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및 「국가균형발전법」 폐지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존 시·도 지역혁신위원회를 대체
  - ※ 다만,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원이 이미 채워진 경우, 센터장을 위촉 우선순위자로 하여 공석이 생기면 그 이후부터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직원은 '파견인력(대학·지자체·기업·연구소·교육청·학교 등에서 파견)'과 '채용 전담인력'으로 구성되며,
  - 대학교육혁신총괄본부 및 핵심분야별 팀을 지자체 소관 비영리 법인 내에서 운영하는 경우 (중심)대학\*으로부터 파견인력 구성 필수
  - \* 대학교육혁신·핵심분야 주관 대학

< 플랫폼별 운영체계(예시)>



-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조직의 명칭, 구성, 인력 배치, 사무소 위치 등을 다양하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플랫폼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은 파견인력을 포함하여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되 플랫폼 조직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운영

## 4

## 핵심분야 선정

### □ 핵심분야

- 대학이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서,
  - 지역 주력산업·현안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 내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영역 중심으로 설정
- 지자체·대학별 자체 발전계획\*들과 방향성이 부합하도록 선정하고,
  - \*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혁신성장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초광역권/강소권 발전계획 등
  - ※ (복수형) 핵심분야가 각각의 지자체별 발전계획과 방향성이 부합해야 함
  - 중장기(5년 이상)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정하여,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유의

< 지역혁신플랫폼 현황 >

지자체	선정연도	핵심분야
광주·전남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에너지신산업</li> <li style="width: 50%;">■ 미래형운송기기</li> </ul>
울산·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li> <li style="width: 50%;">■ 미래모빌리티</li> <li style="width: 50%;">■ 스마트제조 ICT</li> <li style="width: 50%;">■ 저탄소그린에너지</li> <li style="width: 50%;">■ 스마트공동체</li> </ul>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제약바이오</li> <li style="width: 50%;">■ 화장품·천연물</li> <li style="width: 50%;">■ 정밀의료·기기</li> </ul>
대전·세종·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li> <li style="width: 50%;">■ 모빌리티 ICT</li> </ul>
강원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정밀의료</li> <li style="width: 50%;">■ 스마트수소에너지</li> <li style="width: 50%;">■ 디지털 헬스케어</li> </ul>
대구·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전자정보기기</li> <li style="width: 50%;">■ 미래차 전환부품</li> </ul>
부산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스마트항만물류</li> <li style="width: 50%;">■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li> <li style="width: 50%;">■ 친환경 스마트선박</li> </ul>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미래 수송기기</li> <li style="width: 50%;">■ 농생명·바이오</li> <li style="width: 50%;">■ 에너지 신산업</li> </ul>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청정바이오</li> <li style="width: 50%;">■ 지능형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li> </ul>

### □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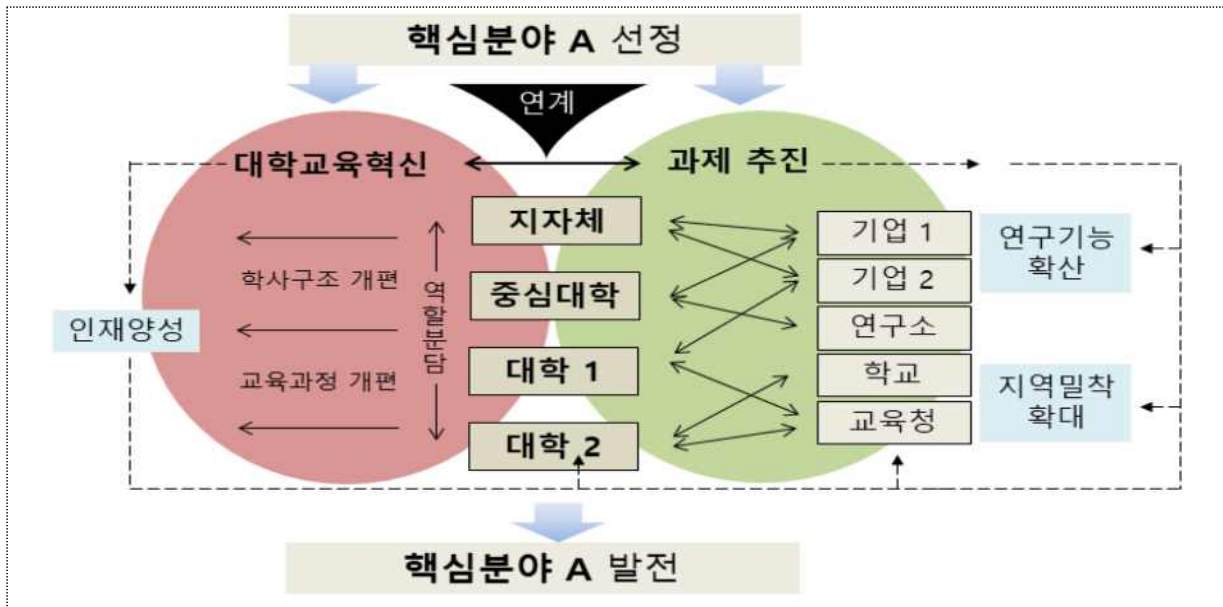
- 각 핵심분야를 주관할 '지자체 부서'와 '중심대학'을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 지자체 부서별 소관 업무, 대학별 특성화 전략 및 해당 핵심분야 관련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할 설정

## 5

# 핵심분야별 지역혁신 지원

### □ 기본방향

- 총괄운영센터와 핵심분야별 팀은 각각의 핵심분야 내에서 '①대학 교육혁신'과 '②분야별 과제'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① 핵심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혁신' 추진

### □ 대학교육혁신 내용

- 참여대학들의 교육체계(학과·정원 분포, 교육과정 등)를 바탕으로 핵심분야(인력수급 등)에 부합\*하는 교육체계 개편 추진
  - \* 각 대학의 발전계획·특성화전략 등과도 부합하여야 함
- 교육체계 개편의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핵심분야별 과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 (예시) 고교-대학 연계과정 운영, 핵심분야 관련 기초소양·교양 교과목 개발·보급, 재직자·전직자 대상 교육과정 제공 등
- 대학교육혁신방안 수립 시 지역별 고등교육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 필요

## □ 대학교육혁신 참여

- (필수 참여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의 학교 중 2024년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서 '핵심분야별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
  - ※ 대학교육혁신 수행단위는 각 대학의 본부
-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은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나 중심대학을 맡을 경우 대학교육혁신에 필수 참여
  - \* 단, 대학교육혁신 소요 비용은 자체 부담하며, 사업 신청 전에 교육체계 개편 등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협의
- (참여방법) 총괄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체계 개편계획 이행 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참여

## 2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

### □ 과제 설정

- (대과제 설정) 지자체가 총괄하여 핵심분야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성과목표인 '대과제'를 설정
- (소과제 구성·운영) 대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 '소과제'들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중심대학이 구성·운영 총괄
  - 핵심분야-대과제-소과제의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지자체, 기업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소과제 구성·운영
    - ※ 평가와 컨설팅 등을 통해 소과제 체계성이 없는 경우 조정 가능
- (지역혁신 자율과제) 핵심분야 외 지역현안 해결, 지역사회 활성화 등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자율 편성
  - 자율과제는 전체사업비의 5% 이내로 편성하되, 플랫폼에 참여하는 일부 시도라도 RISE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15%까지 허용
    - ※ 기존 플랫폼의 총괄운영센터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참여 시도 중 일부가 RISE 시범운영 지역이 되는 경우 지역혁신 자율과제 비율 상향 허용

## □ 과제 참여

- (조건) 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이 하나 이상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대학 외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한 개 기관만 가능

- (방법) 참여기관은 중심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역할을 명확히 하여 참여

-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기관별 명확한 역할 분담 설정 필요

- 지역 외에 소재한 기관도 참여 가능\*하나 주관기관으로는 참여 불가

\* 지역 내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으로는 소과제 등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소과제 협업기관'인 경우에 한해 '지역협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역 외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 참여 가능

◆ 사업 핵심성과의 RISE로의 안정적 연계를 위해 "학생 교육과정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기업 협약 등과 연계되어 지속 지원 필요가 있는 사업은 RISE 체계 내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토록 지역별 협의회 등을 거쳐 RISE 계획(프로젝트, 단위과제)에 반영 가능"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운영 체계 및 사업 안내서)



## 6

## 정보의 공유 및 사업 간 연계

## □ 기본방향

○ 지역 내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보 통합 관리망 구축
• 부처·지자체·대학에서 지원·수행하고 있는 사업 관련 정보 취합, 공유
○ 현황 관리 및 분석
• 정보의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작업 진행
• 지역(플랫폼)의 애로사항 또는 지원의 사각지대 발굴
○ 정보 활용
• 학생, 기업 등 지역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 개선 및 연계 방안 도출 및 제안
○ 상향식 지역인재양성체계 거버넌스 구축
• 지역(플랫폼)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 및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조정
•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 기획 및 프로세스 개선

## □ 정보의 공유·관리

- (정보 공유) 지역혁신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학 관련 사업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수합
- (정보 관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간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 작업 진행

## □ 사업 간 연계

- (연계사업 발굴) 대학교육혁신 방안 마련 및 핵심분야별 과제 설정 시 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 (연계방안 모색) 연계 추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구체적인 '사업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연계추진 관리) 사업 간 연계 추진과정 및 성과를 관리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발굴·개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 제안 → 범부처 논의·지원

## □ 기관 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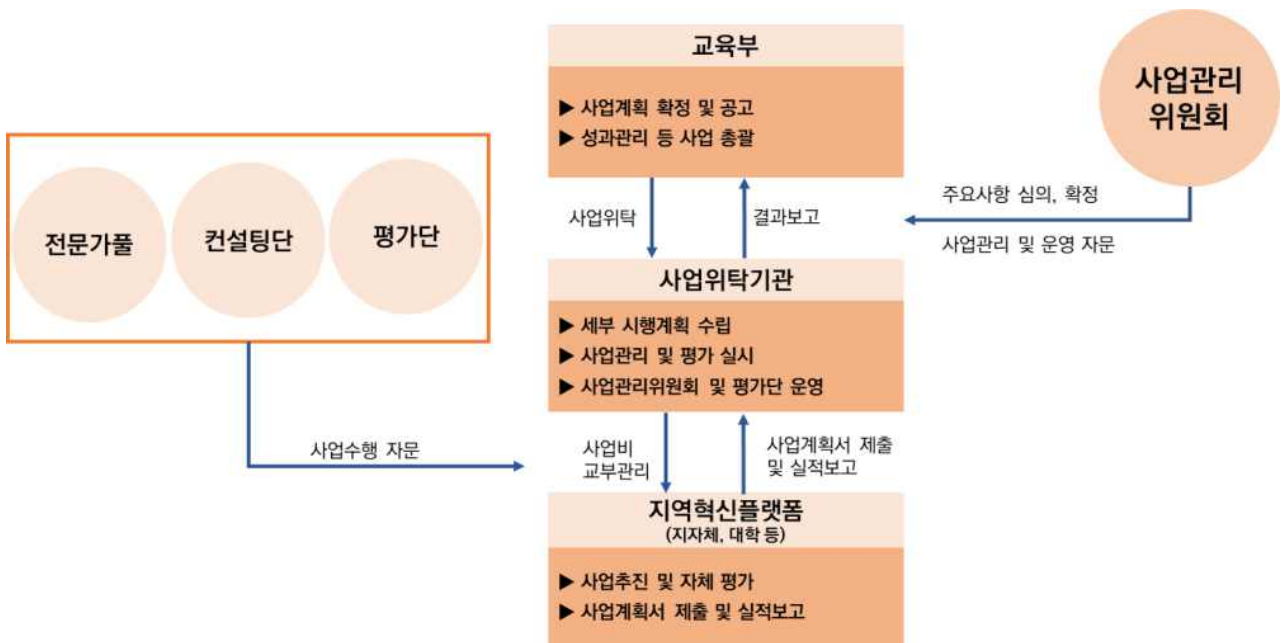
-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별대학·지자체 등에 산재해 있는 취·창업 지원기관의 지원 인력·시설·기자재 등을 연계하여 성과 제고



# V. 사업 관리

## 1 운영관리

### □ 운영체제도



### □ 운영주체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확정·공고, 사업비 집행 총괄 관리, 성과 관리 등 사업 총괄
- (사업 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관리위원회 및 전문가풀·평가단·컨설팅단 구성·운영
  - 연차·단계·종합평가 시행 등 사업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확산 지원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전문가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풀을 구성하되, 다양한 기관의 추천 인사 포함

## □ 운영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 (협업위원회 협약) 지자체, 총괄대학, 중심대학, 지역혁신기관의 장들은 「협업위원회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 지역협업위원회의 목적, 구성원 간 협력과 역할 등 포함
- (사업협약) 선정된 플랫폼은 사업위탁기관과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협약」 체결
  - 총괄운영센터장,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연명 날인
    - \* 공동위원장이인 경우 위원장 모두의 연명 날인 필요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지자체·중심대학·센터의 주요 의무사항, 불이행 시 조치사항, 사업비 교부·관리 등 포함
- (참여협약) 대학교육혁신 참여대학은 대학교육혁신기관 주관 대학의 장과, 핵심분야별 과제 참여기관은 중심대학의 장과 각각 「참여협약」 체결
  - ※ (주요내용) 참여대학·기관의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등

## 2 예산 관리

※ 예산 관리 관련 세부 사항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참조

## □ 사업비 교부

- 전체사업비는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구성
  - 지방비는 '24년 12월까지 편성하고, 사업비는 사업 기간 내 집행 완료\*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지자체장의 예산 확보 협약서 첨부
    - \* 사업 기간 종료 후 소요되는 일부 비용 제외
  - ※ 지자체의 지방비 대응 의무 미이행 시, 지역별 RISE 예산 배분 시 반영 검토 예정
- 국고는 사업위탁기관을 통해 전담기관(비영리법인, 대학 등)에 교부하며, 지방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전담기관에 교부

## □ 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이 확인된 경우 협약 해지, 사업비 집행·지급 정지, 전체 사업비 조정 등의 지원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3.7.)에 근거하여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행·재정적 조치 가능

## □ 사업비 관리

- 전체사업비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전담기관'이 총괄 관리하고,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별도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 지정
  - ※ (전담기관이 대학 내 기구인 경우) 대학(교비)회계 또는 산단회계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00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총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전체사업비 중 ①대학교육혁신본부 예산은 대학교육혁신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②핵심분야별 팀 예산은 각 '중심대학'에 재교부
  - \* (예시) "00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대학교육혁신 계정"
- 중심대학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대학(교비)회계 또는 산단회계\*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직접 관리
  - \* 산단회계 선택 시 이월금은 대학(교비)회계로, '24년 사업비는 산단회계로 집행
  - \*\* (예시) "00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핵심분야 계정"
- 소과제(자율과제 포함) 주관기관이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인 경우 해당 기관에 해당 과제 사업비의 재교부 가능
  - ※ 이 경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소과제별 별도 계정 설치  
(예시 : "00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소과제#-#-#) □□ 계정")
- 하나의 대학이 두 개 이상의 핵심분야 중심대학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에는 핵심분야별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별도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 지정
  - ※ 총괄대학·중심대학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플랫폼도 별도 계정 마련 필요

## □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업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원인행위)을 하면, '사업비를 관리하는 기관'이 지출행위를 함
- 사업비는 <붙임>의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사업기간 종료 후 전체사업비 관리주체는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의무를 지님
  - \* 별도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전체사업비 관리주체에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용실적 보고)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사업비 정산) 사업위탁기관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 사업기간 중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비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부담
- 원활한 사업종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잔여기간 부여 및 해당 기간 중 정리 비용(인건비\* 및 사업운영경비 일부) 집행 가능
  - \* (산정기준) '25년 1월 인건비의 30% × 3개월
  - 단, 잔여기간 중 정리 비용은 사업위탁기관의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회계법인에 의한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 1 성과 창출 지원

#### □ 성과지표 수립 · 관리

- (수립목적)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 (핵심지표) 사업의 핵심가치(개방과 참여, 공유와 연계, 성과와 지속 가능성)를 고려한 공통 성과지표 추진
  - ※ 지역별 RISE 계획의 자율성과지표에 사업 핵심성과지표 포함 유도
- (자율지표) 플랫폼별 사업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중점 관리
  - ※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 수준을 자율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 확인

#### □ 컨설팅 실시

- (주요내용) 플랫폼의 사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성과의 RISE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개별 지자체·플랫폼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RISE로의 통합 이후에도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
  - ※ 지자체 대상 RISE 컨설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 2024년 사업 운영 컨설팅 개요 >

-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혁신플랫폼(지자체 참여 가능)
- (내용) 2023년 현장점검 결과 및 행·재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플랫폼별 사업 운영 성과의 RISE 연계 방안 모색, 사업추진 관련 질의응답 등
- (일정/절차) '24년 연중 / 지역별 수요조사·협의를 거쳐 컨설팅 시기·방법 등 결정

- (결과 활용) 각 플랫폼은 컨설팅단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지자체-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역별 RISE 계획 등과의 연계 추진
  - ※ 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점검 예정

## 2 사업 성과평가

### 1 기존 플랫폼 대상 단계평가 및 연차평가

#### □ 평가 개요

- (추진방향) 그간의 추진 실적 및 '24년 추진계획을 평가하여 사업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성과 고도화·확산 지원
  - 단계평가 대상 플랫폼이 1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평가와 연차평가를 같은 기간에 실시하고, 단계·연차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사업비 배분
- (평가대상) <sup>(단계평가)</sup>대전·세종·충남 및 <sup>(연차평가)</sup>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강원,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총 6개)
- (평가방법)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대면평가 실시
  - \* 단계평가와 연차평가 위원을 동일 패널로 운영
  - (점검내용)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향후 사업 추진계획
    - \* (단계평가) 1단계('21~'23년) 추진실적 / (연차평가) '23년 추진실적
  - (점검자료) 플랫폼이 제출한 실적자료 및 '24년도 사업계획서 등
- (평가시기) '24년 3월 중
- 평가항목 및 배점
  - (단계평가 : 총 600점) 1단계 추진실적(400점) 및 2단계 추진계획\*(200점)
    - \* '24년 사업 기간 종료 후 RISE 통합 예정임을 고려하여 '25.2.28.까지의 추진계획을 평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항목	배점
<b>1단계 추진실적</b>	<b>400</b>	<b>2단계 추진계획</b>	<b>200</b>
1.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정성)	50	10. 사업추진방향(정성)	10
2. 제도 제·개정의 적정성(정성)	20	11. 사업추진체계(정성)	20
3. 대학교육혁신 추진실적(정성)	55	12. 사업추진내용(정성)	85
4.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실적(정성)	55	13. 성과관리계획(정성)	75
5. 연계계획 추진실적(정성)	55	14. 재정투자계획(정성)	10
6. 핵심지표 달성도(정량)	70		
7. 자율지표 달성도(정량)	30		
8. 성과 확산 및 환류 실적(정성)	20		
9. 예산 확보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정성)	45		

- (연차평가 : 총 500점) '23년 추진실적(400점) 및 '24년 추진계획(100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항목	배점
<b>2023년 추진실적</b>	<b>400</b>	<b>2024년 추진계획</b>	<b>100</b>
1.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정성)	50	10. 사업추진방향(정성)	15
2. 제도 제·개정의 적정성(정성)	20		
3. 대학교육혁신 추진실적(정성)	55	11. 사업추진내용(정성)	60
4.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실적(정성)	55		
5. 연계계획 추진실적(정성)	55		
6. 핵심지표 달성도(정량)	70	12. 성과관리계획(정성)	15
7. 자율지표 달성도(정량)	30		
8. 성과확산 및 환류실적(정성)	20	13. 재정투자계획(정성)	10
9. 예산 확보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정성)	45		

## □ 결과 산출 및 활용

- (결과 산출) 실적·계획점수를 포함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플랫폼의 평가 항목별 목표 달성 정도를 판정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점수 산정
  - 단계평가 대상인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은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 '미통과'로 판정하여, 1단계 사업('21.~'23.) 종료 후 지원 중단
- (사업비 조정) 실적 부분 평가 결과(등급, 점수분포, 평가의견 등)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조정 규모 결정\* 및 차등 배분
  - \* (기준금액) 단일형 300억 원, 복수형 480억 원
  - 평가 결과의 환류 시스템 강화를 위해 기존 플랫폼의 사업비 조정 범위를 단계·연차평가 공통으로 20%로 설정

### < 단계·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방식 >

성과평가 결과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 산출방식	2개 플랫폼	2개 플랫폼	2개 플랫폼
사관위 조정 가능 규모	0% ~ +20%	-10% ~ + 10%	-20% ~ 0%

- (결과 활용) 지역혁신플랫폼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별(대학교육혁신, 핵심분야별 소과제) 사업비 조정과 연계(증·감액, 폐지 등)하며,
  - 평가 결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 개선·활성화 방안 모색 및 RISE와의 연계 유도

## [② 신규 플랫폼(2023년 지정) 대상 연차평가]

### □ 평가 개요

- (추진방향) 신규 지정 플랫폼의 추진성과 및 '24년 추진계획을 평가하여 내실 있는 사업 운영 및 성과 목표 달성 유도
- (평가대상) 부산, 전북, 제주 지역혁신플랫폼(총 3개)
- (평가방법)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대면평가 실시
  - (점검내용) '23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24년도 추진계획
  - (점검자료) 플랫폼별 실적자료, '24년도 사업계획서 등
- (평가지기) '24년 4~5월 중 실시 예정

### □ 결과 산출 및 활용

- (결과 산출) 실적·계획점수를 포함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플랫폼의 평가 항목별 목표 달성 정도를 판정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급 결정
- (사업비 조정) 평가 결과(등급, 점수분포, 평가의견 등)를 바탕으로, 사업관리 위원회에서 300억 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조정 규모 결정 및 차등 배분
  - 평가 결과의 환류 시스템 강화를 위해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배분 규모를 20% 범위로 확대

<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방식 >

연차평가 결과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 산출방식	1개 플랫폼	1개 플랫폼	1개 플랫폼
사관위 조정 가능 규모	0% ~ +20%	-10% ~ +10%	-20% ~ 0%

- (결과 활용) 지역혁신플랫폼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별(대학교육혁신, 핵심분야별 소과제) 사업비 조정과 연계(증·감액, 폐지 등)하며,
  - 평가 결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 개선·활성화 방안 모색 및 RISE와의 연계 유도



### [③ 사업 종료에 따른 종합평가(안)]

#### □ 종합평가 실시 개요(※ 세부사항은 종합평가 계획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추진방향) RIS 사업 운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RISE로의 안정적 전환 지원
- (평가일정(안)) 종합평가 계획 안내(~'24.3분기) → 종합평가 실시(~'24.12.)
- (결과 활용) '25년 교육부의 지역별 RISE 사업 예산 배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지역 RISE센터가 대학 공모 심사 과정에서 플랫폼별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권고

### 3 성과 공유 및 확산

#### □ 사업 백서 제작

- (목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종료(~'25.2.)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성과 및 우수사례를 RISE와 연계
- (주요내용) 사업 추진경과, 운영 성과, 플랫폼별 사업 노하우 등
  - 종합평가 시 제출한 플랫폼별 사업 실적자료, 현장간담회 및 관계자 대상 FGI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작
- (추진일정(안)) 연구책임자 선정('24.상반기) → 현장간담회(~'24.9.) → 운영성과 정리 및 FGI 실시(~'25.1.) → 백서 제작(~'25.2.)
- (결과 활용) 지역별 RISE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공유·안내

## □ 우수모델 발굴 및 성과 확산

- (우수성과 공유) 교육부-사업위탁기관-플랫폼 간 협의회·성과공유회,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모든 지자체·대학에 확산
- (RISE 연계) 지자체-플랫폼의 주기적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우수 사례 및 평가 결과 공유 등을 통한 사업 참여 주체 간 협력 강화 추진

---

## VI. 향후 추진 일정(안)

---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플랫폼 대상 단계평가 및 연차평가 실시 : '24.3월
- 신규(2023년 선정) 플랫폼 대상 연차평가 실시 : '24.4~5월
- 모든 플랫폼 대상 종합평가 실시 : ~'24.12월

## 붙임

##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

※ 구체적인 '사업비 항목별 집행 및 관리기준'은 사업위탁기관을 통해 안내

항목	사용 용도
가. 인건비	1) 동 사업 관리를 위해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2) 동 사업 운영 전반의 총괄·관리를 위한 총괄운영센터장이 전담인력인 경우의 인건비 3)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내 보조인력의 보수 4) 보직인력 및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 5) 우수한 사업성과, 사업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전년도 이월금의 10%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나. 장학금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 유예생 등의 경우 장학금 지원 불가
다.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 전공·비전공·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 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 사업계획과 연계된 원고료, 위탁용역 비용 2)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 정책연구비, 실험실습비, 전문가 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용료 및 사용료, 여비, 홍보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 소과제 중 연구개발과제 참여인력에 대한 소과제 활동비 등 - 교육프로그램 및 소과제 운영과 관련된 단기(1개월 이내) 보조인력 보수 - 소과제 및 자율과제 주관기관의 기관지원경비(소과제 사업비의 3% 이내)
라.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강의실·실험실·실습실 등 교육·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및 교육·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전년도 이월금의 30%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마.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1)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H/W, S/W) 설치·구입·임차·유지·보수 비용 2)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라이선스 등 비용
바. 기업지원·협력 활동비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재직자 교육 등 기업 지원 및 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사. 성과활용·확산 지원비	1) 사업관련 세미나, 포럼, 워크숍 개최비, 성과홍보를 위한 협의회 운영 경비 2) 기술·지식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검증 비용,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1) 사업운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지원 경비 2)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팀) 내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수수료, 여비, 홍보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전년도 이월금의 5%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자. 간접비 (※ 비영리법인 전담기관, 산학협력단 한정)	1)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경비 2) 소과제(자율과제 포함)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경비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 중 직접 관리하는 사업비의 3%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